

서울고등법원

제 40 민사부

결 정

접수
2015 07. 09.
법무법인(유) 화우

유이준형

사 건 2014라755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서기중
 서울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영립, 유승룡, 이준형, 신동환
 채무자, 상대방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대표자 감독회장 전용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기
 제 1 심 결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자 2013카합2600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4나33255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총회재판위원회가 2013. 11. 22. 선고한 판결(사건 2013총일03)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권한행사 및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 가. 및 나.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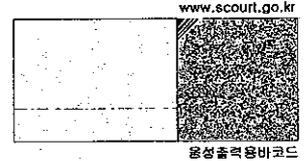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2000. 6. 15.부터 채무자 산하 서울연회 소속 동대문교회(이하 '동대문교회'라 한다)의 담임자인 목사로 있던 사람이다.

나.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특별시'라 한다)는 동대문교회의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위 토지 인근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 2009구합3392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7.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



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동대문교회는 2011. 12. 7. 유지재단을 상대로 동대문교회의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9714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계속 중 이 사건 교회건물 및 토지가 수용되었다.

2)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7,320,230,880원 및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2,019,966,440원 합계 19,340,197,320원(=17,320,230,880원 + 2,019,966,440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제 2527호로 공탁하자, 동대문교회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 31. 이 사건 교회건물만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까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대문교회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교회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2,019,966,440원만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 모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8.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 2014다67782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라. 채권자에 대한 기소

박상연 외 5명은 2013. 5. 3. 채무자 산하 서울연회(이하 '서울연회'라 한다) 심사



위원회에 채권자 등을 고소하였고, 위 심사위원회는 그 고소 내용을 심사한 후, 2013.

6. 24. 다음과 같은 기소사실(이하 '이 사건 기소사실'이라 한다. 위 기소사실에서 '피고' 또는 '피고 서기종'은 채권자를 의미한다)로 채권자를 기소하였다.

1. 교회 재산의 매매계약위반, 임시구역회 결의 시 사기행위, 규칙오용, 목회자 윤리강령 등의 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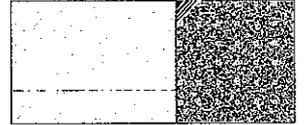
가. 피고는 2011년 4월 15일 광고지구에 교회 이전부지를 계약완료하고, 2011년 4월 24일 임시 구역회를 열어 광고지구 교회 이전부지를 의제로 채택하고 결의되면 곧 계약하겠다고 구역회원들에게 발표하였다. 피고 서기종 목사는 9일 전 본인이 계약한 사실을 구역회들을 속이고 구역회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는 교회기능과 질서문란범과([886] 제3조 제4항)이며, 2011. 4. 24.의 임시 구역회는 9일 이전에(2011. 4. 15.) 계약한 사실을 은폐하고 온 교인을 기망한 범과([887] 제4조)이며 피고는 본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서 요구되는 '부동산(교회부지)계약은 구역회를 통과하여 유지재단의 허락을 받아 유지재단 명의로 계약하여야 한다'라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고 개인이 임의로 계약하므로 유지재단과 분쟁이 발생하여 시간이 지나자 유지재단과 교회에 막대한 계약지연 손해금을 전가하고 있음을 항변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피고 개인이 한 행위의 결과로 동대문교회나 유지재단에 엄청난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한 것은 배임행위의 범과

나.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에 재산의 피해를 준 범과

피고는 동대문교회 부임 후 19건의 소송비용으로 인한 재산손실이 막대하므로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의 재산손실이 인정되므로 교리와 장정 재판법([886] 제3조 제4항)과([563] 제4조), ([887] 제3조3항), (목회자 윤리강령6조1항), ([886] 제3조10항)에 의거 기소함

2. 법정난동, 집단폭행, 집단폭행교사 방조의 범과

가. 2012. 1. 10. 피고 서기종 목사는 교회에 광고하여 대형차량으로 교인 60명을 동원하여 재판정으로 투입시킨 후 준비한 현수막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항의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방해, 시위하므로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범과.



나. 재판이 종료된 후 60-70명의 교인을 동원하여 재판위원 목사, 장로, 방청객의 장로들을 집단 상해하였고 존치를 주장하는 교인들을 집단 폭행하였으며 피고는 경황이 없어 저지하지 못하였다 하나 이는 재판위원들을 집단폭행한 것은 교단 법정외의 기능과 신성한 법정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범과가 인정되므로 교리와 장정, 재판법([886]제3조4항)과 (886]제3조11항), ([886]제3조6항)에 의거 기소함.

3. 공문서 주소지 조작의 범과

피고는 서울시에서 유지재단 앞으로 오는 중요한 공문서 수취인 주소를 동대문교회로 하여 서울시 공문서가 지연전달 혹은 전달이 안 되어 유지재단이 절차를 실기하게 하였고 수신자 주소가 동대문교회 주소로 보낸 공문이 2회 이상 발견됨을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로 알게 되었으며 공문이 유지재단으로 직접 접수되는 것을 방해한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범과가 인정되므로 교리와 장정, 재판법([887]제4조2항)에 의거 기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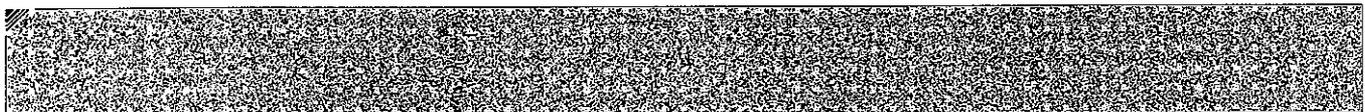
4.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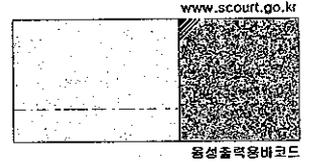
가. 피고는 2011. 12. 7.에 유지재단을 상대로 교회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부동산 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소송을 제기한 것은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감리교 재산은 증여(기증)로 유지재단 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법이며 감리교의 정체성이고 전통인데 명의신탁 재산이라 주장하며 고소한 것은 감리교회를 탈퇴하여 재산을 이탈시키려 하고 있는 범과

나. 피고는 “매매대금은 유지재단 명의로 예치한다.”라는 장정을 위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청구취지를 불확지 공탁된 “수용보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행위는 장정을 위반해서라도 사회법을 이용하여 감리회의 재산을 이탈시키려는 것이 인정되므로 교리와 장정, 감리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 규정([561]제2조1항), 감리회에 속한 매매계약 및 매도대금관리[563]제4조)에 의거 기소함.

5. 서울연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범과

피고 서기종 목사는 서울연회의 2012년 32회와 2013년 33회의 연회에 등록금은 내고 회의는 참석하지 않음을 피고에게 확인한바 장정 [386]제91조(연회직무)3항에 의거 기





소함

마.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 및 고소인들의 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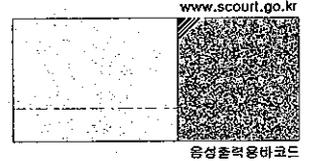
1)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2013. 9. 16.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사실 중 제5항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 기소사실 중 제1의 가.항 중 배임행위 범과 부분, 제1의 나.항,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기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채권자에게 근신 5개월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러자 고소인인 한휘언 외 2명은 2013. 10. 1. 위와 같은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다.

바. 이 사건 총회판결의 선고와 그 내용

1) 채무자의 총회재판위원회(이하 '총회재판위원회'라 한다)는 2013. 11. 22. 기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채권자에 대하여 출교를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그런데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① 이 사건 기소사실 중 제1항은 ㉠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범과(채무자의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중 제3조 제4항, 이하에서 인용하는 조항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위 제7편 재판법의 조항을 의미한다), ㉡ 동대문교회 대표자로서 교인을 기망한 범과(같은 조 제9항), ㉢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에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한 범과(같은 조 제10항), ㉣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한 범과(같은 조 제12항), ㉤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범과(제4조 제3항)에, ② 위 기소사실 중 제2항은 ㉥ 신성한 법정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범과(제3조 제4항), ㉦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범과(같은 조 제10항), 교인들을 집단 폭행한 범과(같은 조 제11항)에, ③ 위 기소사실 중 제3항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범과



(제4조 제2항)에, ④ 위 기소사실 중 제4항은 유지재단 소유 재산을 개체교회인 동대문 교회의 독립재산으로 이탈시켜 사유화하려는 범과(제4조 제7항)에, ⑤ 위 기소사실 중 제5항은 직무를 유기한 범과(제4조 제2항)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채무자의 교리와 장정(이하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4편 의회법

[386]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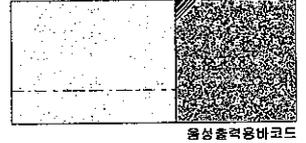
- 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직,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 1. 무고하게 2년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게는 감독이 정직을 명한다.

제7편 재판법

[886]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887]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이면서 금품을 수수한 때

[888]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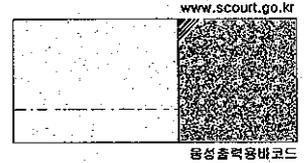
-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제5항, 제6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한다.

[913]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④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 ⑧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재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7명 중에서 대치한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에게 출교를 명한 이 사건 총회판결이 절차적으로는 ① 법조인이 재판위원 중 1인으로 참석하여야 함에도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② 고소인들이 채권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 권고를 해야 함에도 고소인들이 그러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며, ③ 이 사건 기소사실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구성요건



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과를 유죄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종전에 이미 처벌받은 범과에 대하여 다시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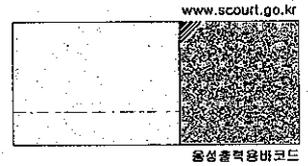
나. 또한 실체적으로도 ① 이 사건 기소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 배임행위 범과의 경우, 일반 형법에 따라 배임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만 범과에 해당하는데 채권자는 일반 형법에 따라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이 사건 기소사실 제4항의 경우에도, 동대문교회를 당초 위치에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도 유지재단이 교회 이전을 미루는 바람에 교인들의 중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수행한 것이고, 동대문교회의 새로운 부지를 유지재단 명의로 매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일 뿐, 채권자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하자가 있다.

다. 이러한 하자들은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총회 판결이 무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를 직권 파송하는 등 동대문교회의 진정한 담임목사인 채권자의 권한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정지와 채권자의 담임목사로서의 권한행사 및 업무수행에 대한 방해 금지를 구한다.

3.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는, 이 사건 총회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총회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재판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위 총회판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이 정한 재심 절차에 따라 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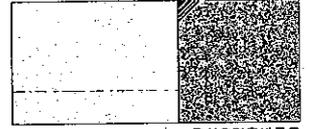


받을 수 있는 이상,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3편 제38조는 개체교회 담임자가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 교회 회의의 주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을 정하고 있고, 채권자 역시 순수한 종교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대외적으로도 동대문교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더욱이 채권자는 동대문교회를 대표하여 유지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 산하의 서울연회 소속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계속 보유하는지 여부는 위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기소사실은 채권자의 종교활동 이외에도 이 사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판결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인지의 문제는 순수하게 종교 교리의 해석에만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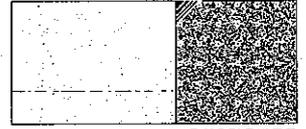


살펴보는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채무자 내부의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거나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총회판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내부에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고, 이 사건 교리와 장정에 의할 때 재심은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하는 점(제7편 제60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 여부 및 이에 기초한 채권자의 채무자 산하 서울연회 소속 동대문교회 담임목사 지위 보유 여부는 충분히 사법심사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보전권리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징계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징계결의 또는 처분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하자가 있고, 그러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않는 한, 교회헌법에 따라 다룰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징계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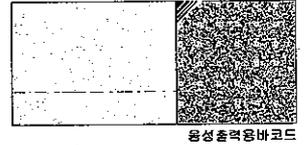
1) 재판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하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판결을 위하여 2013. 11. 8. 열린 변론기일에 재판 위원으로 위원장 전용춘, 위원 임성이, 김일고, 강행구, 서풍원 등 총 5명이 출석하였고, 2013. 11. 22. 열린 선고기일에는 재판위원으로 위원장 전용춘, 위원 임성이, 김성기, 김일고, 강행구, 서풍원 등 총 6명이 출석하였으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재판위원인 강현중은 위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된다. 또한,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30조 제8항은 "총회 재판위원회는 법조인 1명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34조 제1항은 "재판은 법정 위원수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법조인인 재판위원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총회판결에 법조인인 재판위원이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재판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2) 고소절차에 관련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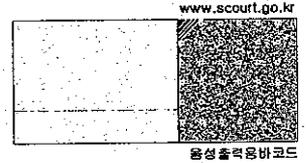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9조 제1항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채무자의 총회재판위원회는 2014. 3. 11. 다른 사건에서 고소인이 권고장을 보냈을 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러한 권고가 무효라고 판



단한 사례가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권사 박상연, 장로 한휘언, 남궁황은 채권자를 고소하기 이전인 2013. 3. 18.부터 같은 해 4. 9.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채권자에게 권고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중 2회의 내용증명우편에는 '마태복음 18:15-17에 따라 권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서면들은 모두 고소장에 첨부되어 총회재판위원회에 제출된 사실, 마태복음 18:15-17에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는 사실, 채무자는 2012. 12. 7. 열린 재판법세미나에서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중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권고한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다룬 적도 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아니한 사실이 소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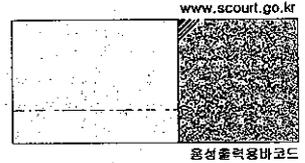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권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특히 위 교리와 장정 제9조 제1항은 성경의 해석 등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고소에 앞선 권고의 방법에 관하여 채무자 내부적으로도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총회판결 이후에 선고된 총회재판위원회의 별도의 판결에서 비로소 위 교리와 장정에 관한 일응의 해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들이 내용증명우편의 방식으로 권고장을 보냈을 뿐 채권자를 직



접 만나 권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로 증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3) 죄형법정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의 하자

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2조 제2항에서는 교역자와 교인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총회재판위원회는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기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중 심사위원회가 작성한 기소장에 적시되지 아니한 조항들을 적용한 사실, ③ 특히 이 사건 기소사실 제3항의 경우, 채권자가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공문을 동대문교회로 발송하도록 주소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위 교리와 장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 ④ 이 사건 기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기소장에는 위 교리와 장정 제4조 제7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였고, 위 조항이 결국 채권자에게 출교를 명하는 재판의 근거가 된 사실, ⑤ 이 사건 기소사실 제5항의 경우, 당초 기소장에는 위 교리와 장정 제4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총회판결은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면서 위 제4조 제2항을 적용한 사실, ⑥ 채권자는 이 사건 총회판결 이전인 2012. 8. 21.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 동대문교회 부지 등의 공원화계획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공문의 내용을 즉시 채무자 또는 유지재단에 알려 범 감리교단적으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 임원회나 구역회의 결의 없이 서울특별시에 동대문교회 부지 및 건물을 수용당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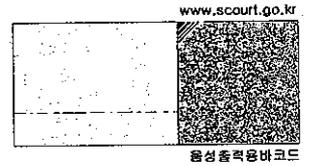


내는 등 불법한 방법으로 교회의 행정조치를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 2011. 2. 13. 소집된 구역회의에 상정된 의안의 표결방법을 규정에 따라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에도 거수표결을 통해 가결시킴으로써 규칙을 오용하였다는 범과 사실로 정직 5월의 판결(총회재판위원회 2012총일01)을 받은 사실이 소명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소명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 판결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고불리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또는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총회 판결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을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해 보더라도, 교회의 재판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제1조), 벌칙의 종류 역시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정되어 있으며(제5조 제1항), 피고소·고발인과 심사위원장 외에 고소·고발인 역시 상소할 수 있고(제54조), 전체적인 체계상으로도 실제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등 목적과 구조, 체계 등에 있어서 일반 사회에서의 법률에 따른 형사 재판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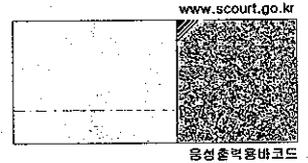
②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8조가 비록 '이 재판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단순히 일반 사회의 형사법규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채무자의 재판위원회가 법조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회의 재판에서도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불고불리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7편은 제3조와 제4조에서만 일반범과와 교역자의 범과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기소사실 중에는 위 제3조 및 제4조 이외의 조항들이 적시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그 중 일부에는 위 제3조 및 제4조가 아예 언급되어 있지도 않은 점, 기소절차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가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회법상 고소와 기소행위에 대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공소제기 요건과 방식 기타 법적 완결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점, 이 사건 총회판결은 심사위원회가 작성한 이 사건 기소사실 자체는 사소한 문구 수정 이외에는 특별한 수정 또는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한 후, 바로 뒤에 위 기소사실과 관련된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중 어느 조항의 범과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밝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위원회가 반드시 심사위원회가 의율한 범과 조항에 엄격하게 구속되어 이에 대한 유·무죄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기소사실 제3항의 경우 기소장에도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4조 제2항이 적시되어 있고, 이 사건 기소사실 제4, 5항과 관련하여 기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적시된 조항의 경우, 고소인들의 상소이유서나 각 준비서면에 구체적인 서술과 함께 해당 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소장에 첨부된 고소장에도 '채권자가 감리회의 전통적 교리를 부인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범과자이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출교·면직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그에 대한 해명이나 방어의 기회가 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채권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론에 임하였으



며, 위 변호인이 재판위원회에서 채권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구술로 의견을 개진하고, 장문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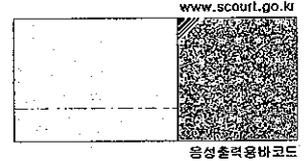
⑥ 채권자가 2012. 8. 21.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받은 정적 5월의 판결의 범과 사실과 이 사건 총회판결의 범과사실은 그 배경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동대문교회 부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동대문교회의 이전 관련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종전 판결의 범과사실과 이 사건 총회판결의 범과사실이 반드시 중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실제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총회판결에서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여기에 포섭시켜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자율적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종교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대한 존중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 보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징계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에서도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기록상 제출된 자료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교리와 장정에 의할 경우, 총회재판위원회가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의율한 범과 중 채권자를 출교에 처할 수 있는 범과는,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4조 제7항에서 정한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 시 금품을 수수한 때"가 유일하다(제5조 제3항). 그런데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채권자가 동대문교회를 대표하여 유지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소



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개체교회의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되도록 정한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을 부인하는 반감리회적 행위이고, 감리회의 제도와 전통을 거부하여 채무자 회원 이기를 포기하고 위 교리와 장정을 고의로 위반해서라도 유지재단 소유 재산을 채권자가 대표로 있는 동대문교회의 독립재산으로 이탈시켜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동대문교회의 새로운 부지를 유지재단이 아닌 동대문교회 명의로 매수한 점'과 '유지재단 명의로 예치된 매매대금은 유지재단 명의의 대체재산 취득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동대문교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나)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2편 제7장 제22조에서는 "개체교회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 제23조에서는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개체교회가 유지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것은 유지재단에게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의사보다는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개체교회에 있는 경우가 많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참조),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교회법이 아니라 국가의 강행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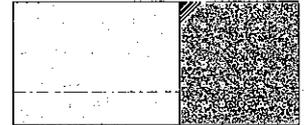
다) 동대문교회는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인근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2008. 2.경 대책위원회를 구성



하였고,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동대문교회가 속한 구역회는 2011. 2. 13. 이 사건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협의매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대문교회는 2011. 4. 15. 대책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수원시 소재 광고택지개발지구를 교회 이전부지로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2011. 4. 24.에 열릴 구역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동대문교회는 2011. 4. 15. 경기도시공사와 광고택지개발지구 내 2,593㎡에 관하여 매매대금 5,976,865,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는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0%는 2011. 10. 15., 2차 중도금 30%는 2012. 4. 15., 잔금 30%는 2012. 10. 15.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자체 시그 일수에 따라 연 9% 내지 연 13%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동대문교회가 속한 구역회에서는 2011. 4. 24. 위 연석회의의 결정을 승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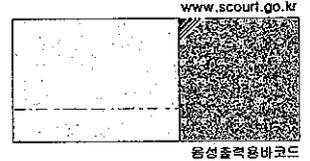
라) 동대문교회는 2011. 5. 21. 유지재단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의 처분(공공용지 협의매도) 승인신청을 하면서, 보상금액 19,914,192,920원을 유지재단으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위 보상금을 5년 이내에 종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과 사용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유지재단에 예치금 사용 승인신청을 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보상금 송금청구서 및 각서 등을 첨부하였으나, 유지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마) 그러자 동대문교회는 2011. 12. 7. 유지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1. 12. 16.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의 수용재결을 하자, 서울특별시는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에 채무자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동대문교회가 유지재단을 상대로 2013총특일01호로 제기한



승인요청 사건에서 2013. 8. 27.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단체인 동대문교회 소유라고 판단하면서,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그 수용에 따른 공탁금을 동대문교회가 단독으로 출금받는 것을 승인하고 그 돈으로 광고택지개발지구 종교시설 부지를 매수하여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인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지재단은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9448호로 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4. 12. 11. 위 대법원 91다2944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유지재단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피고 보조참가인 동대문교회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나6953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사법기관이 종교단체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기소사실 제4항의 범과를 채권자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채권자에게 출교 처분을 한 이 사건 총회판결은 그 실체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채권자는 이 사건 기소사실 제1항 말미의 배임행위 관련 범과에 관하여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위 범과에 대하여 의율한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3조 제10항의 범과를 저지른 교역자에 대하여는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의 벌칙만 가능하고(제5조 제3항, 제4조 제1항) 출교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채권자에 대한 출교 처분을 한 이 사건 총회판결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위 배임행위 관련 범과에 관한 실체적 하자 유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채권자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였다(제4조 제7항)"고 평가한 행위는 '채권자가 동대문교회를 대표하여 유지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수행한 행위'이다. 비록 그 이면에 채무자 내부 조직의 운영, 규율 등에 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분쟁은 교회법이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적 분쟁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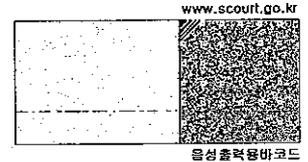
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교회의 매매" 또는 "사리사욕"과 같은 요건은 반드시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어의(語義)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이면에 있는 종교적 함의 등을 고려하는 채무자의 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동대문교회의 대표자로서 채무자의 유지재단을 상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총회재판위원회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출교를 명한 이 사건 총회판결의 유·무효를 가림에 있어서는 종교단체의 자율성 못지않게 그 구성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도 존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당사자 일방인 채무자가 상대방인 동대문교회에 사법상의 권리 실현을 포기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을 그대로 승인하는 셈이 되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 채권자가 동대문교회의 대표자로서 유지재단이 아닌 동대문교회 명의로 교회 이전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채권자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



다. 즉 앞서 본 대로, 광고택지개발지구 내 이전부지 매매계약은 동대문교회 대책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것이고, 그 후 소속 구역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채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채권자는 이전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유지재단에 보상금 송금 청구서 및 각서를 제출하면서 공공용지의 협의매도로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의 보상금을 유지재단이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동대문교회에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종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것과 사용 전에 유지재단에 사용 승인신청을 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동대문교회 명의로 이전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지재단으로부터 그 승인을 거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동대문교회를 채무자로부터 이탈시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로 동대문교회 명의로 이전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그 이후에도 채권자가 이전부지 매매계약의 계약 당사자를 동대문교회로 유지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지재단에서 이전부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유지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채권자가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동대문교회 또는 채무자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 채권자가 동대문교회를 채무자로부터 이탈시켜 사유화하려고 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라) 채권자는 채무자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교회건물을 협의매도하는 방안을 서울특별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5월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일부 교인들이 동대문교회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었으나, 이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대문교회가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을 서울특별시에 협의매도하기로 결정하고 교회 이전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동대문교회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마) 또한 동대문교회가 경기도시공사와 체결한 이전부지 매매계약의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지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의 처분 승인을 받지 못한 동대문교회로서는 교회 이전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동대문교회를 대표하여 유지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두고 "채권자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권자를 출교에 처한 이 사건 총회판결은 무효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총회판결이 무효인 이상 그 효력정지 및 채권자의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권한행사와 업무수행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5.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의 확정시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장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해 소명되는 바와 같이 채무자가 이 사건 총회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대문교회에 새로운 담임목사를 직권 파송하는 등 채권자의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며 그 권한행사 및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채권자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일응 소명된다.

6.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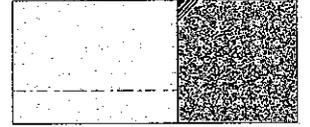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3.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전휴재

판사 윤도근



정본입니다.

2015. 7. 6.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김 민 섭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고인대리
인 소송대리
인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19층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영립, 황적화, 유승룡



135-798

2060317 - 156684 ↓

(형사과 제40민사부)

2014-007-755-506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4라 755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예정 기일 :

담당재판부 : 제40민사부

법원사무관 김민섭

직통 전화 : 02-530-1249

팩 스 : 595-6156

e-mail :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